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732
------------	-----

제출년월일 : '98. 12.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정이유

- 청소년문제의 심화에 따라 광범위한 청소년 상담 및 생활지도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 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 및 생활지도와 더불어 청소년 문제예방등에 대한 사회교육등 청소년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안산시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자 함.

□ 주요골자

- 청소년상담실의 명칭과 소재지(안 제2조)
 - 명칭 : 안산시청소년상담실
 - 소재지 : 초지동604-3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내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다른 장소 설치가능
- 운영주체 : 직영하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위탁가능(안 제3조)
- 상담실의 기능 : 상담, 교육및연수, 조사및연구,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기타 프로그램운영등(안 제4조)
- 청소년상담실의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직원 : 7인이내 공개채용
- 청소년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안 제9조)
 - 협의회 : 15명이내
- 복무 :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고 야간은 일과후 3시간(안 제10조)
- 청소년상담실 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예산의범위내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의함.
- 청소년상담실 수의자 부담사업등(안 제14조)
 - 심리검사등 실비부담

□ 조례제정(안) : 별첨 1

□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61조, 영 제61조.(별첨 2)
- 예산수반사항 : 173,180원(도비22,500천원포함)
- 사전예고결과 : 해 당 없 음
- 기타참고사항 : 별첨 3
 - 98 시·군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경기체육 82554-134호)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청소년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상담실의 명칭은 안산시청소년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②상담실의 소재지는 안산시 초지동 604-3번지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운영) 상담실은 시장이 이를 관리·운영한다. 다만, 상담실의 효율적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상담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상담사업 계획수립
2. 청소년 관련상담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4.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운영
5. 부모교육등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운영
6. 청소년 관련 정보제공 및 자료수집
7. 청소년 활동에 관한 지역의견 수렴 또는 조사 및 연구
8. 각종 연수사업 및 상담자료의 제작 보급
9. 청소년 상담기관·청소년단체 상호간 연계 및 지원

제5조(상담직원) ① 상담실에는 7인 이내의 직원을 둔다.

② 상담직원의 종류와 자격은 별표1과 같다.

③ 상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장) 상담실장은 시장의 지휘 감독 하에 상담사업을 총괄하고 상담관련 여론수렴 및 관리를 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

제7조(징계) ① 상담직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안산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직원의 면직) ① 상담실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제12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때(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 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 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② 시장은 상담실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운영협의회) 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실의 운영계획의 심의조정

2. 청소년상담관련 운영실적의 평가분석

3.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4. 상담실 운영에 따른 협의등

- ②협의회 위원은 지역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간사는 상담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 ④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연2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복무)**
- ①상담실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 ②청소년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18:00부터 21:00까지(동절기는 17:00-20:00까지)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상담실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는 익일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 ③상담직원이 상담업무를 수행시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기타 복무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봉급 및 수당등)**
- ①상담실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봉급,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한다.
 - ②경력산정 및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2의 경력산정기준표에 의한다.

- 제12조(근무상한연령)** 상담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실장·전임상담원·상담원은 지방공무원법 일반직 공무원 5급이상에 준함.
 2. 행정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6급이하에 준함.

제13조(문서관리) 상담실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관련 서류는 공문서 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의자부담) ①상담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성인 상담(단, 단순상담 제외)
 2. 외부장소에서 2일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
 3. 상담실내에서 실시하는 성인 프로그램
 4. 청소년 및 성인의 각종 심리검사
- ②제1항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안산시 수입증지를 검사신청서에 첨부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담직원의 종류와 자격 (제5조 제2항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상 담 실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의 상담분야[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 박사학위 이상 취득후 상담관련 실무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상담관련 실무에 5년이상 경력자 ·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전임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실무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상 담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 석사학위 이상 취득후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년제 대학 졸업후 상담관련 실무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육성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 정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이상자로서 행정 또는 상담보조업무 수행가능한 사람으로서 전산 또는 WP 3급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별표 2]

경력산정기준표(제11조 제2항 관련)

직종별	구 분	경 력	환산비율
상 담 직	“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박사과정 이수연한(3년한) · 석사과정 이수연한(2년한) · 대학상담기관 및 관련학과 전임교육원 이상 근무 경력(석사이상의 조교경력 포함) · 군경력(의무기간에 한함) ·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상담기관 · 초등 및 중등학교 전임 교원 	100%
	“을”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시간강사(주당 8시간 이상) ·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 상담원 근무 경력 · 대학 상담기관 및 관련학과 조교 경력 	80%
	“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시간강사(주당 5시간 이상)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 근무경력 ·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설상담기관의 상임 상담원 근무경력. 	50%
행정요원	“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경력 · 동일 직종의 실무경력 · 석사과정 이수연한(2년한, 학사과정 4년한) · 군경력(의무복무기간) 	100%
	“을”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직종의 실무경력 	50%

- ※ 1. 초임 상한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수 없음('98. 1. 1기준)
2. 경력산정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 중복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경력만 인정
3. 관련학과는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보기)학 등
4. 기타 상담관련 실무경력은 전임경력에 한함.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32
------------	-----

제안년월일 : 1998. 12. 22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외 6인

1. 수정이유

- 일부 불합리한 조문내용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 청소년 상담사업중 검사 수수료에 대한 검사표준 단가표를 부칙에 신설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 (상담직원) 제3항 단서조항중 “필요한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수정하고,
- 안 제8조(직원면직) 제2항 조문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에”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2호를 동조 동항 제1호로 한다.
- 안 제9조(운영협의회) 제2항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원중 1/3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 안 제14조(수익자 부담) 제2항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3에 의한 검사표준 단가표에 의한다”로 수정한다.
- 별표1(상담직원의 종류와 자격)의 상담실장의 자격기준 내용중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를 “위 기준에 준하는 자로서 상담실장으로 적합하다고”로 수정한다.
- 별표3 검사표준단가표를 신설한다.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상담직원) 제3항 중 “필요한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한다.

제8조 (직원면직) 제2항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에”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동조 동항 제1호로 한다.

제9조 (운영협의회) 제2항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원중 1/3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한다

제14조 (수익자 부담) 제2항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3에 의한 검사표준 단가표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1 [상담직원의 종류와 자격(제5조 제2항 관련)]의 상담실장 자격기준 내용중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를 “위 기준에 준하는 자로서 상담실장으로 적합하다고”로 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검사 표준 단가표 (제14조제2항 관련)

검사내용	검 사 명	단 가	비 고
성 격	MMPI	1,600원	
	문장완성검사	500원	
	MBTI성격유형검사	1,500원	
	특수인성		
	성격진단검사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1,200원 1,500원
	KPI성격검사	대학생용 교교생용	2,000원 2,000원
정신건강	간이정신진단검사	600원	
	Rorschach	1,000원	
	TAT	1,000원	
	BGT	1,000원	
진로 및 학습	학습습관검사	2,700원	
	진로탐색검사	1,400원	
작성 및 흥미	흥미검사	1,000원	
	학습흥미검사	1,000원	
	GATB 적성검사	1,500원	
	적성탐색검사	2,000원	
지 능	K-WISC	5,000원	
	K-WAIS	5,000원	
	PTI	5,000원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5조 (상담직원) ①~②(생략) ③상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u>필요한 경우</u> 자격기준에 적합한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p>	<p>제5조 (상담직원) ①~② (원안과 같음) ③..... <u>보득이한 경우</u></p>
<p>제8조 (직원의 면직) ①(생략) ②시장은 상담실 직원에 대하여 <u>다음 각호</u> <u>의 1에</u>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u>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등 인력조정이</u> <u>불가피할 경우</u> 2. (생략)</p>	<p>제8조 (직원의 면직) ①(원안과 같음) ②.....<u>다음에</u> 1. <u>〈삭 제〉</u> 1. (원안제2호와 같음)</p>
<p>제9조 (운영협의회) ① (생략) ②협의회 위원은 지역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담관련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종사자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u>〈단서 신설〉</u></p>	<p>제9조 (운영협의회) ① (원안과 같음) ②..... <u>단, 위원중 1/3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한다.</u></p>
<p>③~⑥(생략)</p>	<p>③~⑥(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제14조 (수익자 부담) ① (생략) 1. ~ 4. (생략)</p> <p>② 제1항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p> <p>(별표1)</p>	<p>제14조 (수익자 부담) ① (원안과 같음) 1. ~ 4. (원안과 같음)</p> <p>② <u>별표 3에 의한 검사표준 단가표에 의한다.</u></p> <p>(별표1)</p>
상담직원의 종류와 자격	상담직원의 종류와 자격
구 분	자 격 기 준
상담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의 상담분야(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 박사학위 이상 취득후 상담관련 실무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상담관련 실무에 5년이상 경력자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전임상담원	(생 략)
상 담 원	(생 략)
행 정 원	(생 략)
구 분	자 격 기 준
상담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의 상담분야(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박사학위 이상 취득후 상담관련 실무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상담관련 실무에 5년이상 경력자 위 기준에 준하는 자로서 상담실장으로 적합하다고
전임상담원	(원안과 같음)
상 담 원	(원안과 같음)
행 정 원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p>(별표2) (생략)</p> <p>〈설〉</p>	<p>(별표2) (원안과 같음)</p> <p>(별표3)</p> <p><u>검사표준단가표</u> (제14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검사내용</th><th>검 사 명</th><th>단 가</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성 격</td><td>MMPI</td><td>1,600원</td><td></td></tr> <tr><td>문장완성검사</td><td>500원</td><td></td></tr> <tr><td>MBTI성격유형검사</td><td>1,500원</td><td></td></tr> <tr><td>특수인성</td><td></td><td></td></tr> <tr> <td>성격진단검사</td><td>초등학생용 중학생용</td><td>1,200원 1,500원</td><td></td></tr> <tr> <td rowspan="2">KPI성격검사</td><td>대학생용</td><td>2,000원</td><td></td></tr> <tr><td>고교생용</td><td>2,000원</td><td></td></tr> <tr> <td rowspan="4">정신건강</td><td>간이정신진단검사</td><td>600원</td><td></td></tr> <tr><td>RORSCHACH</td><td>1,000원</td><td></td></tr> <tr><td>TAT</td><td>1,000원</td><td></td></tr> <tr><td>BGT</td><td>1,000원</td><td></td></tr> <tr> <td rowspan="2">진료및학습</td><td>학습습관검사</td><td>2,700원</td><td></td></tr> <tr><td>진로탐색검사</td><td>1,400원</td><td></td></tr> <tr> <td rowspan="4">적성및흥미</td><td>흥미검사</td><td>1,000원</td><td></td></tr> <tr><td>학습흥미검사</td><td>1,000원</td><td></td></tr> <tr><td>GATB적성검사</td><td>1,500원</td><td></td></tr> <tr><td>적성탐색검사</td><td>2,000원</td><td></td></tr> <tr> <td rowspan="3">지 능</td><td>K-WISC</td><td>5,000원</td><td></td></tr> <tr><td>K-WAIS</td><td>5,000원</td><td></td></tr> <tr><td>PTI</td><td>5,000원</td><td></td></tr> </tbody> </table>	검사내용	검 사 명	단 가	비고	성 격	MMPI	1,600원		문장완성검사	500원		MBTI성격유형검사	1,500원		특수인성			성격진단검사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1,200원 1,500원		KPI성격검사	대학생용	2,000원		고교생용	2,000원		정신건강	간이정신진단검사	600원		RORSCHACH	1,000원		TAT	1,000원		BGT	1,000원		진료및학습	학습습관검사	2,700원		진로탐색검사	1,400원		적성및흥미	흥미검사	1,000원		학습흥미검사	1,000원		GATB적성검사	1,500원		적성탐색검사	2,000원		지 능	K-WISC	5,000원		K-WAIS	5,000원		PTI	5,000원	
검사내용	검 사 명	단 가	비고																																																																					
성 격	MMPI	1,600원																																																																						
	문장완성검사	500원																																																																						
	MBTI성격유형검사	1,500원																																																																						
	특수인성																																																																							
	성격진단검사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1,200원 1,500원																																																																					
KPI성격검사	대학생용	2,000원																																																																						
	고교생용	2,000원																																																																						
정신건강	간이정신진단검사	600원																																																																						
	RORSCHACH	1,000원																																																																						
	TAT	1,000원																																																																						
	BGT	1,000원																																																																						
진료및학습	학습습관검사	2,700원																																																																						
	진로탐색검사	1,400원																																																																						
적성및흥미	흥미검사	1,000원																																																																						
	학습흥미검사	1,000원																																																																						
	GATB적성검사	1,500원																																																																						
	적성탐색검사	2,000원																																																																						
지 능	K-WISC	5,000원																																																																						
	K-WAIS	5,000원																																																																						
	PTI	5,000원																																																																						